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유)

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 2013서감3450

사 건 명 : (주)코리아세븐의 거래강제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주)코리아세븐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의 거래강제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 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무혐의" 및 "심의절차종료" 처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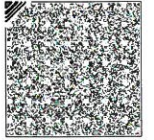
- 다 음 -

○ 가맹점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의 거래강제행위(무혐의)

피조사인은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주가 원할 경우 유지보수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실제로 롯데알미늄(주)의 유지보수서비스 구입을 거부한 점포가 존재하는 등 거래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국 매장에 대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서비스를 위해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와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대표로 체결하는 것은 타사도 동일하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유지보수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무혐의)

롯데알미늄(주) 및 동사 기공사업본부의 매출액 중 피조사인과 거래한 용역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현저한 거래규모로 볼 수 없으며, 월정액 및 기타 수리비 등을 합산한 유지보수비 총액이 타사보다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롯데알미늄(주)가 주요 시설장비의 제조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유지보수서비스 업체로 선정할 사유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지원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ATM기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심의절차종료)

롯데피에스넷(주)의 수수료 체계는 타사와 달리 구간별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어 점포별로 거래건수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며, 기기 종류 및 제공 서비스의 차이 등으로 인해 타사의 정액제 수수료와 비교하여 수수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수수료 체계 수립 당시 피조사인은 업계 평균 수수료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수수료 체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조사인의 지원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3. 기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김혜선 사무관(☎ 044-200-450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김혜선 서비스업감시 전결 2016. 2. 16.
과 과장 정창욱

협조자

시행 서비스업감시과-136 (2016. 2. 16.) 접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전화번호 044-200-4501 팩스번호 044-200-4529 / khs0422@ftc.go.kr / 대국민 공개